

봄 날 방문 간 호 복 지 센 터

장 기 요 양 급 여 이 용 계 약

1.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신체활동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 대상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할 수 있다.
- 2) 계약목적은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 3) 계약 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액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3.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1) 장기요양급여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하되 사용한 총급여비용 중15%(일반), 9%(감경), 6%(감경), 0%(기초)를본인이 부담하고, 본인의 부담금 외의 금액은 공단에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급한다.
- 2) 월 한도액 초과분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
-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다음과 같다.

[비용부담] (단위:원)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본인 일부부담금			
		일반(15%)	감경(9%)	감경(6%)	기초생활수급권자
1등급	2,069,900	310,485	186,291	124,194	면제
2등급	1,869,600	280,440	168,264	112,176	
3등급	1,455,800	218,370	131,022	87,348	
4등급	1,341,800	201,270	120,762	80,508	
5등급	1,151,600	172,740	103,644	69,096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수가 외의 금액을 본인이 전부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4.계약자,당사자의 의무

- 1)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① 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 ③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 2)수급자의 의무
 -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②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시 즉시 통보 의무
- 3)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등에 대한 책임의무

5.계약의 해제

수급자(보호자)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서비스가 종결되며,이용료(본인부담금)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6.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 1) 수급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은 조정할 수 있다.
- 2) 장기요양 수가 인상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로 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 3)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해 “장기요양급여제공(이용)계약서”를 별도 작성 한다.

7.서비스 종류

본 기관의 서비스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방문요양 서비스(신체활동 및 일상생활 등 지원)
- 2) 방문목욕 서비스
- 3) 방문간호 서비스
- 4) 수급자의 건강유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5)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안내

8.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부담

- 1)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화장실 이용하기,옷 갈아입기,머리감기 등)및 가사활동,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2) 방문목욕: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 3)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등을 제공한다.
- 4) 기타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을 준수한다.

[등급별 월 한도액] (단위:원)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방문요양] (단위:원)

구분	방문요양	본인 일부부담금 (15%)	본인 일부부담금 (9%)	본인 일부부담금 (6%)	기초생활 수급권자
30분	16,630	2,495	1,497	998	면제
60분	24,120	3,618	2,171	1,447	
90분	32,510	4,877	2,926	1,951	
120분	41,380	6,207	3,724	2,483	
150분	48,250	7,238	4,343	2,895	
180분	54,320	8,148	4,889	3,259	
210분	60,530	9,080	5,448	3,632	
240분	66,770	10,016	6,009	4,006	

[방문목욕]

(단위:원)

구분	방문목욕 (60분 이상)	본인 일부부담금 (15%)	본인 일부부담금 (9%)	본인 일부부담금 (6%)	기초생활 수급권자
차량이용 (차량내 목욕)	84,670	12,701	7,620	5,080	면제
차량이용 (가정내 목욕)	76,340	11,451	6,871	4,580	
차량 미이용	47,670	7,151	6,230	2,860	

[방문간호]

(단위:원)

구분	방문간호	본인 일부부담금 (15%)	본인 일부부담금 (9%)	본인 일부부담금 (6%)	기초생활 수급권자
15분 이상~ 30분 미만	40,760	6,114	3,668	2,446	면제
30분 이상~ 60분 미만	51,110	7,667	4,600	3,067	
60분 이상	61,490	9,224	5,534	3,689	

- ※ 30분 미만은 비용산정을 하지 아니함
- 심야가산-밤10시부터 아침6시 이전 이용 시 가산30%

· 휴일가산-관공서 공휴일,일요일 가산30%

· 유급휴일가산-유급 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서비스 이용 시 가산50%

9.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 ① 서비스제공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분은 모두 기관에서 배상할 의무를 진다.
- ②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였을때 배상할 의무를 진다.
- ③ 서비스 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 ①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수급자를 보호한다.
- ②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기관대표 및 보호자와 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